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1. 개요

- 가. 계약명: 2026학년도 2학기 전주-진천 캠퍼스 간 셔틀버스 임차 계약
나. 사업기간: 2026. 9. 1.(화)~12. 18.(금), 기간 중 75일
다. 운행구간: 전주캠퍼스 ↔ 진천캠퍼스 / 1일 1회(왕복) 운행
라. 운행차량수: 1대(45인승)
마. 운행방법: 매주 월, 화, 수, 목, 금(주 5회 운행, 토·일요일 및 공휴일 등 제외)
바. 운행노선

구분	출발	도착	비고
전주캠퍼스	07:10	09:00	출·도착 시간은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진천캠퍼스	18:30	20:30	

2. 차량기준

- 가. 운행차량은 ‘을’의 소유차량으로 2026. 1. 1.자 기준으로 9년 이내 출고된 차량으로 한다.
나. 운행차량은 정기점검을 필히 하여야 하고, 정비 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차량 내부에 냉·난방시설 및 안전벨트 등을 갖추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차량 유지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 및 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철저한 차량정비와 청결유지 및 안전 운전에 최선을 다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안전운행과 민원 확인을 위해 차량용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LED 전광판을 이용자가 인식하기 쉬운 전면에 설치하여야 하며, 대학교가 요구하는 랩핑 광고물을 부착한다.(단, 제작 및 부착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아. 계약상대자는 책임보험, 종합보험(대인배상은 무한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보험가입증서 및 차량등록증 사본을 계약서에 첨부)

3. 권리와 의무

- 가. 계약상대자는 차량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대학교의 지시에 따라 수송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대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나. 대학교에서 운전기사에게 업무지시를 할 경우 계약상대자를 통하여 하여야 하며, 대학교는 계약상대자의 소속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지시는 금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차량에 대한 수리 및 정비, 보험료, 공과금, 과태료와 운전기사의 임금, 사고처리 등 차량 운행과 운전기사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결행 또는 대차 운행 및 대리운전 운행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학교의 사전 동의를 득한 경우 임시운행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한다.
※ 임시운행 대체 차량 운행 시 당초 계약된 운행차량의 조건과 동일해야 함.

- 마. 계약상대자에게 차량운행 기록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바. 계약상대자는 이용자에게 특이사항(이용자 신변상의 문제 등)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사. 계약상대자는 캠퍼스 간 원활한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낭 및 소화물 탁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운전기사 자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가.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 취득 후 공고일기준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의 경력자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범죄사실이 없는 자를 배정하여야 한다.
-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 및 운전기사를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대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인적사항을 대학교에 제출하고, 전보 및 해직 등 인사 명령을 사유로 운전기사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대학교에 미리 고지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라.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 마.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게 근무수칙 등 철저한 교육과 차량 정비를 통하여 통학버스 이용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바. 계약상대자의 운전기사는 대학교의 통학버스 운행 세부 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탑승객들에게 피해를 입혀 월 3회 이상 경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사.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를 지정하여 동일 차량과 동일 운전기사로 운행하여야 한다. 단, 운전기사 등의 교체 사유가 발생할 경우 1주일 이전에 대학교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아. 계약상대자는 통학버스 운영 계약 업무 수행 중 차량의 사고, 운행중단, 운전기사의 경조사 등에 대비하여 동급의 대체기사 및 차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아야 한다.

5. 운전자의 의무

- 가. 운전자는 이용자에게 친절과 예의를 다하여야 하고,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 나. 운전자는 항상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 다. 운전자는 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유지 관리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라. 운전자는 정해진 통학버스 운행 노선 및 시간표에 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 마. 운행 중 습득 한 문서·금전·물품은 즉시 대학교 측에 인계한다.
- 바. 운전자는 이용자가 승·하차시 좌석에 앉은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사. 운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 음주운전 행위
 -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핸드폰 사용 및 통화 행위
 -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 운전 중 정해진 노선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 통학 학생 또는 교직원 등에게 통학버스 운행의 명목으로 현금 및 물품을 요구하는 행위
 - 이용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언행이나 폭언 등
- 아.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사항을 대학교에 즉시 보고하여야한다.
-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 피해자 가해자의 인적 사항
 - 사상자의 인적사항
 -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 자. 매년 운전자가 이수해야 할 안전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6. 대금지급

- 가. 계약상대자는 통학버스 운행비용에 대한 관련서류(세금계산서 등)를 구비하여 당월 말일까지 청구해야 하며, 대학교는 익월 10일 까지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거나 기타 대학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대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대금 지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 손해배상

- 가. 계약상대자가 상기에서 정하는 사항(의무)을 위반할 경우 대학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지체 없이 대학교의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거 통학버스의 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 수행 중 차량이나 운전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대학교 또는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가한 때에는 소속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액 이외 모든 민형사상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해지 및 계약 완료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본 계약에 의해 운행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 마. 계약상대자는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물품 및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바. 계약상대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사.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대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비용에서 이를 상계할 수 있다.

8. 계약해지

가. 다음 각호의 경우, 당사자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1) 어느 일방의 어음 또는 당좌거래의 정지,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화의절차 개시신청, 파산신청이 있거나 해산이 되는 경우
- 2)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비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 및 채납처분 등이 통지된 경우
- 3) 행정명령 등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차량운행이 불가능 할 때
- 4) 계약상대자의 지속적인 무단 결행(월 3회 이상) 및 법령의 위반으로 대학교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인정될 때
- 5)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사업을 양도 또는 매각하는 경우

나. 다음 각호의 경우, 어느 일방은 상대방에게 서면통지로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10일 내에 그 내용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1)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 2) 계약상대자 직원의 단체행동으로 대학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3) 기타 어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어느 일방은 1개월 전에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서면에는 해지의 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9. 관계법령의 준수

당사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 및 비용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10. 권리 등의 양도 등 금지

가.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청, 담보 제공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제1항에 따라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수도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의 상대방과 제3자에 대하여 본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 계약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만약 양도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본 계약의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기사의 권리 의무 양도 시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거래 및 직접적인 유료 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는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11.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 불능에 의한 본 계약에 대한 소송은 우석대학교를 관할하는 법원의 해석을 구한다.

12. 계약의 변경

본 계약서의 내용은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며, 그 변경 및 수정은 대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해당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